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4-13

광 주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0구합13431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담당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
변 론 종 결 2021. 1. 14.

판 결 선 고 2021. 2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9. 9. 20. 원고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 등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4-13

가. B 주식회사(이하 '이 사건 시행사'라 한다)는 2011년경부터 [redacted] [redacted]구 C 대 52,274.8㎡(이하 '이 사건 사업지'라 한다) 지상에서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(이하 '이 사건 분양사업'이라 한다)을 시행하였는데. 2011. 12. 13. 주식회사 D(이하 '이 사건 시공사'라 한다)과 공사대금을 145,757,007,500원 정하여 공사도급계약(이하 '이 사건 도급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2. 2. 21. 이 사건 시행사 및 시공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(이하 '이 사건 신탁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이 사건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축물을 신탁 받는 동시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위 시행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.

다. 이 사건 시공사는 2012. 2. 21.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4. 5. 1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완공하였고, 원고는 2014. 7. 14.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54,591,994,577원으로 계산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후 이를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에 신고하였고, 같은 날 취득세 4,328,575,840원, 농어촌특별세 2,612,280원, 지방교육세 247,347,190원 총합 4,578,535,310원을 납부하였다.

라. 이 사건 시공사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로 인하여 추가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. 9. 11. 주위적으로는 원고를,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시행사를 상대로 각 70억 3,414만 원 및 89억 4,538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(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5601호), 제1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에 관한 승계계약상 동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, 이 사건 시행사는 이 사건 시공사에게 추가공사대금 8억 3,096만 원 상당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4-13

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이 사건 시행사가 항소하였고, 항소심(서울고등법원 2017나2021532호) 법원은 2018. 12. 19. 이 사건 시행사는 이 사건 시공사에게 7억 9,786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19. 1. 5. 확정되었다(이하 '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'이라 한다).

마.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이 797,862,000원만큼 증액되었음을 이유로 2019. 1. 21. 위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취득세 수정신고를 하고, 2019. 3. 15. 취득세 22,340,136원, 농어촌특별세 1,595,724원, 지방교육세 1,276,579원와 위 건물의 취득세 법정신고기한(2014. 7. 14.)을 기준으로 한 합계 14,233,430원의 가산세(신고불성실가산세 2,234,010원 + 납부불성실가산세 11,999,420원, 이하 이를 합하여 '이 사건 가산세'라고 한다)를 추가로 납부하였다.

바. 원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였으나, 사후에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과세표준이 증액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. 4. 15.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(조심 2019지2052호)을 제기하였다가 2019. 9. 10.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중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, 피고는 2019. 9. 20.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거부처분'이라 한다).

사. 원고는 위 조세심판에서 청구취지를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변경하였고, 조세심판원은 2020. 5. 2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, 원고는 2020. 5. 25.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4-13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 후 적법하게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였는데, 취득세 법정 신고기한의 경과 후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.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인 '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'에 해당한다.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3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4. 판단

가.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,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·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,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(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2두66 판결,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).

나.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1)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시행사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. 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4-13

런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설계변경 등의 사유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'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'이라고 해석되므로 인·허가상 설계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사건 시행사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변경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2)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추가공사금액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결과 및 사업승인조건의 변경으로 시공된 항목으로서 '인·허가상 설계변경에 의한 경우', '연면적 증가', '공사현장변경' 등의 사유로 인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사나 원고로서는 이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.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은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한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는바, 원고가 인·허가상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될 공사대금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4-13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4-13

별지

관계 법령

■ 지방세법

제10조(과세표준)

⑤ 다음 각 호의 취득(증여·기부, 그 밖의 무상취득 및 「소득세법」 제101조제1항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3. 판결문·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

제20조(신고 및 납부)

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)부터 60일[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1조(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)

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(이하 이 장에서 "산출세액"이라 한다) 또는 그 부족세액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■ 지방세법 시행령

제18조(취득가격의 범위 등)

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4-13

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. 다만,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.

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1. 판결문: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(화해 · 포기 · 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)

■ 지방세기본법

제49조(수정신고)

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1.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

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4조(과소신고가산세 · 초과환급신고가산세)

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(이하 "과소신고"라 한다)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(이하 "초과환급신고"라 한다)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(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, 이하 "과소신고납부세액등"이라 한다)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

제55조(납부불성실 · 환급불성실가산세)

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(이하 "과소납부"라 한다)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(이하 "초과환급"이라 한다)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, 과소납부분(납부하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4-13

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(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제57조(가산세의 감면 등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